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17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22.

발의자 : 정춘숙 · 윤후덕 · 김정호

김상희 · 권칠승 · 인재근

조오섭 · 윤관석 · 박정

이원택 · 김윤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·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 · 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음. 이른바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.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.

이에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 · 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“자료”를 각각 “자료 또는 의견”으로 한다.

8.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